

“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,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”

# KBIZ 중소기업중앙회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'중소기업자 지위 인정' 관련 "긴급" 의견수렴

1. 네트워크 경제의 중추로서 중소기업·소상공인간 협업을 이끌어 가시는 귀 조합(연합회)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현행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시책의 근거법령에서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·지자체의 지원시책 참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.

※ '19년도 중기부 운영 지원시책 376개 중 20개만 참여 가능한 것으로 확인

3. 이에, 본회는 다음과 같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1항 및 4항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동 법상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금융, 연구개발, 인력, 수출, 판로 등 지원시책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발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-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('20.7.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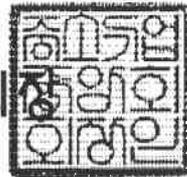
현행	개정(안)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"중소기업시책"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1. ~ 4. (생략) <신설>	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"중소기업시책"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②~③ (생략)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	②~③ (현행과 같음)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

4. 이와 관련하여, ① 귀 조합(연합회)의 의견을 청취하고, ② 현재 조합(연합회)가 참여하지 못하는 지원시책 사례를 발굴코자 하오니 각 조합에서는 불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24일(금) 오전까지 '필히'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제출처 : [이메일] kms1022@kbiz.or.kr, [팩스] 02-780-1260

- 불 임 : 1. 조합(연합회) 의견점토(제출양식) 1부.  
 2. 조합의 정부 지원시책 참여불가 사례(제출양식 및 예시) 1부. 끝.

# 중소기업중앙회



수신자 연합회(전체), 전국(전체), 지방연합(전체), 지방비연합(전체), 사업연합(전체), 사업비연합(전체)

과장 김민석

실장 <sup>전월 07/21</sup>  
왕재록

수신담당

예산통계

협조자

시행 조합정책실-717 (2020.07.21) 접수

우 07242 서울특별시 명동포구 은행로 30 / www.kbiz.or.kr

전화 02-2124-3213 전송 02-780-1260 / kms1022@kbiz.or.kr / 부분공개



【 참고자료 】

**현황 및 문제점**

- “중소기업협동조합”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간 연결의 힘을 통해 개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협업하여 추진하는 플랫폼
  -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쟁력을 보완하고,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경제 성장도 견인

---

\* 새정부 경제정책방향(17.7) 中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(중소기업간 협업 통한 규모경제 실현)

---

- 그러나, “중소기업협동조합”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규정하는 ‘중소기업자’ 범위에서 현재 제외

---

\* 현행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‘중소기업자’는 △영리기업, △협동조합(「협동조합기본법」), △소비자생활협동조합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) 등임

---

- 「중소기업기본법(제2조④)」에 의거,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원시책 근거법령에서 중소기업자를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능
-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, 전담인력 등이 부족한 현실을 지원시책 활용 및 보완을 통해 협업 플랫폼의 강점을 발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려고 하나,

---

[참고] 공동사업 추진 위한 주된 자금조달 방법 (제2차 종합실태조사. 중기부-중양회, '19)  
 ⇨ 조합원 회비(46.7%), 내부보유금(19.9%) ↔ 정부정책자금(4.4%), 대출(3.5%)

---

-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
- 또한, “중소기업협동조합”은 연구개발, (청년)인재확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활용의향이 있음에도 법적 한계에 간혀 참여의지 상실 및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에 걸림돌로 작용

---

\* 참여불가사례 : △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, △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, △악취저감기술 지원제도, △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, △내일채움공제 등

---

## 추진방향

-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 받아, 금융·기술개발·인력·수출·판로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가능토록 법 개정

## 기대효과

- [패러다임 혁신]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존 관수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융·복합 新산업을 촉진하고, 민수·해외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
- 미래산업을 주도할 언택트·바이오·헬스 등에도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발판 마련 가능

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간 ‘연결의 힘’이 반드시 필요하며,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바로 ‘기업간 연결의 결정체’이므로 조합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” (19. 11. 박영선 중기부 장관님 언론발표)

- [정책방향 부합]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·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및 규모의 경제를 구현

·세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일치('17.7, '中企-협력생태계 조성')  
·中企 회복 및 제조혁신 등으로 코로나 극복 위한 3차 추경의 복제달성도 가능

- [지원효과 제고] 정부·지자체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을 통해 지원효과의 전파·확산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가능

·최근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60년간 축적된 네트워크와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조례 제정(강원 15개, 기초1개), 활성화계획 수립(부산, 제주) 등 적극 지원 중  
·충남의 경우,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 추진 ('20.5, 올해 지원사업 예산 1.5억원 배정)

【 제출양식2 】 (참이불가 지원서책명)

※ 조합(연합회)명 : ○○○○○○

현황 및 문제점

○

-

건의사항

○

-

【 예시1 】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기술혁신이 시급하나, 열악한 연구환경과 고급인력 확충에 어려움으로 R&D 역량제고에 한계
- 정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충 애로해소를 위해 연구인력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,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파견 근거는 없음
  - \* 지원내용 : 신규 및 경력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, 재직 R&D 인력 역량강화 지원 등
-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조직화와 협업을 바탕으로 핵심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어 업종별로 소속된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
- 이를 통해 정부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주도형 연구 개발 역량제고 가능

□ 건의사항

- 연구인력 파견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토록 법률 개정

<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개정(안) >

현행	개정안
제34조의2(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) ①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정부출연연구기관"이라 한다)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	제34조의2(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중소기업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----- ----- ----- -----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【 예시2 】 (청년)내일채움공제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정부는 청년채용 확대 및 中企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해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(청년)내일채움공제 등 지원제도 운영 중
- 그러나,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中企만을 대상으로 하고 中企협동조합은 참여 불가능한 실정
-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동사업 및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사업조정, 하도급대금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함에 불구하고,
  -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도에서 배제되어 신규인력 채용 및 장기근속 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

□ 건의사항

- 채용공제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근로자가 가입 가능토록 법률 개정  
 <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개정(안) - 중소기업중앙회 제외 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,
5의2. "중소기업 청년근로자"란 중소기업의 <u>대표자</u> 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.	5의2. ----- <u>대표자</u> 또는 <u>협동조합등</u> 이----- -----,
6. "중소기업 핵심인력"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<u>대표자</u> 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.	6. ----- ----- <u>대표자 또는 협동조합등</u> 이----- -----,
제35조의3(성과보상기금의 조성)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35조의3(성과보상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,
1. <u>중소기업</u> 이 부담하는 기여금	1. <u>중소기업 및 협동조합등</u> 이 -----

\* [참고] 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
 2. "협동조합등"이란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·사업협동조합·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.